

(제7-6호)

###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

1. 주총 결의일	2021년05월20일
2. 의안 및 주요내용	제1호의안. 이사 선임의 건 제2호의안. 정관 일부 변경의 건
3. 결의내용	<p>제1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. 의장은 본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 심미성이 2021.3.23. 사임하였으므로 그 후임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선임을 구한 바,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선출하다. 기타비상무이사 : 최성준</p> <p>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. 의장은 본 회사의 이사 감사에 관한 정관 규정 일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하고 그 승인을 구한 바, 출석주주 전원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가결하다. - 변경 후 정관 조항</p> <p>제29조【이사과 감사의 원수 및 선임】 ①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. ②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「상법」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③감사는 1인 이상으로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④이사와 감사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선임한다.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감사에 대한 선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</p> <p>제29조의2【대표이사 선임】 ①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 ②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대표이사가 수 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되,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 규정을 정할 수 있다.</p>
4. 기타	

#### 【이사 선임세부내역】

성명	출생 연월	임기	신규선임여부	현직	국적
최성준	1970.07.26	3년	신규선임	기타비상무이사	대한민국

#### [작성요령]

- 주1) 현금배당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결의 내용 란에 다음 방식에 의한 주당배당금 및 배당총액 등을 기재  
- 주당배당금은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되, 주식의 종류별(보통주, 기타주) 주주별(대주주, 소액주주)로 배당금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구분한다.
- 주2) 【이사, 사외이사, 감사 선임 시[이사, 사외이사, 감사선임 시 선임세부내역】을 작성  
예)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시 다음과 같이 작성
- 주3) 신규선임여부에는 “재선임” 또는 “신규선임” 을 기재